#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 의 안<br>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1. 개정이유

가.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은 지금까지 성주군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물원 관람을 무료로 운영하여 왔으나

나. 최근 가야산 만물상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많은 등반객과 관람객이 찾고 있고 2006년 개원후 현재까지 성주군과 가야산의 홍보와 자생식물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식물원으로써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므로 식물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 식물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입장권은 일반,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의 개인입장권과 단체 입장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나. 입장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 식물원 입장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 식물원 관리와 관람에 방해를 하는 자 및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서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 ❍ 음주, 흡연 등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식물을 채집하거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식물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라.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매점, 기념품 판매점 등 관람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0.10.1. ~ 2010.10.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이하 “식물원”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식물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인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교도경비대 등 포함)을 말한다.
4. “일반”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유료입장객 중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위치)** 식물원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야생화식물원길 4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 제2장 식물원 업무 및 운영 등

**제4조(업무)** 식물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물유전자원 확보·보존·육종·연구
2. 식물원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식물원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외 다른 식물원과의 각종자료, 유전자원 등 정보의 교환
5. 식물자원연구 및 조사
6. 기타 식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휴관일)** ① 식물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
2.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을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식물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장 입장료 징수

**제7조(입장료)** ① 식물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오전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입장권은 일반, 청소년, 군인 및 어린이의 개인 입장권과 단체 입장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 군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제9조(입장료 징수방법)**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장 식물원 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정신이상자
2. 술에 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 할 우려가 있는 자
6. 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식물원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행상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쓰레기 투기 행위

6. 식물을 채집하거나 식물원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식물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식물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 제5장 식물원 관리

**제13조(편의시설)** ①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야생화 화분, 기념사진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장품의 수집)** ①성주군 야생화식물원담당(이하 “담당” 이라한다)은 산림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 조사에 필요한 유물 들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담당은 식물원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담당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식물원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 일 반 | | 청소년 및 군인 | | 어 린 이 | | 비 고 |
|---|---|---|---|---|---|---|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 1,000 | 700 | 700 | 500 | 500 | 300 | |